

※ 본 안내문은 오픈 전 참고용으로 향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내용은 청약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므로 청약 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구분	내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추천기관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국가보훈처 충북남부 보훈지청 보상과	국가보훈처 충북남부 보훈지청 보상과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청약통장 가입요건	필요없음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기준 85㎡ 이하 타입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 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